

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공고

경상남도과 (재)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 혁신을 위하여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7일

(재)경남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명: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정부 고도화 중심 지원정책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소재의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(지원 대상) 도내 중소·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- (지원 내용)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
□ 지원과제 및 조건

- (지원 과제) 67개사
- (지원 조건)

구분	유형	사업비 구성(지원금 최대기준)	수행기간
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	기초구축 (최초신청/동일수준)	1.2억원 이내(도비 0.36억원, 시군비 0.36억원, 신청기업 0.48억원)	6개월 이내

※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※ 사업기간 연장은 구축완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(단, 3개월 이상의 연장은 협약변경위원회 승인 필요)

○ (사업비구성)

지원유형		사업량	지방비 지원 규모							
			정부 지원금		경상남도(최대)		시·군(최대)		기업부담금	
		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
경남형 스마트공장 (기초구축)	기초 (최초구축)	67개사	-	0%	36백만원	30%	36백만원	30%	48백만원	40%
	동일수준		-	0%	36백만원	30%	36백만원	30%	48백만원	40%

※ 중간최종점검 결과, '중단'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, '실패'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

* "동일수준"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1회 지원 가능)

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"동일수준" 신청이 가능

*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'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"최초구축" 신청이 가능

2 신청기간 · 방법 및 자격 등

□ 신청기간·방법

○ (신청기간) 공고일 ~ 6. 4.(목) 17:00 까지

- ☞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·제출·수정 불가
- ☞ 「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- 마이페이지 - 나의 담당과제 현황」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"제출완료" 확인
- 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, 접수 불가

○ (신청방법) 도입기업·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
- 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*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필수

○ (제출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구분		제출서류 목록
공통 제출 (도입·공급 기업)	필수	- 사업계획서 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
도입기업 제출	필수	-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: sminfo.mss.go.kr / 한국중견기업연합회: www.fomek.or.kr -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('22~'24 or '23~'25)
	해당 시	-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제출 - 최근 년도('25)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(해당시, 직접수출만 인정) *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에서 발급 - 가점 증빙 서류(해당시,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)
공급기업 제출	해당 시	-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(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)

- * 사업계획서 서식은 <https://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- *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*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

□ 신청 자격

○ (도입기업)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* 중소·중견** 제조기업

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
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
- ☞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
- ☞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○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

* (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- 알림 /참여마당 - 공지사항'에서 "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(1077번 게시글)" 참조

- (지원 제외 사항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▷ 휴·폐업중인 기업 |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
|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|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▷ 동일·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| |

-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(붙임2 참조)
-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 (붙임2 참조)

※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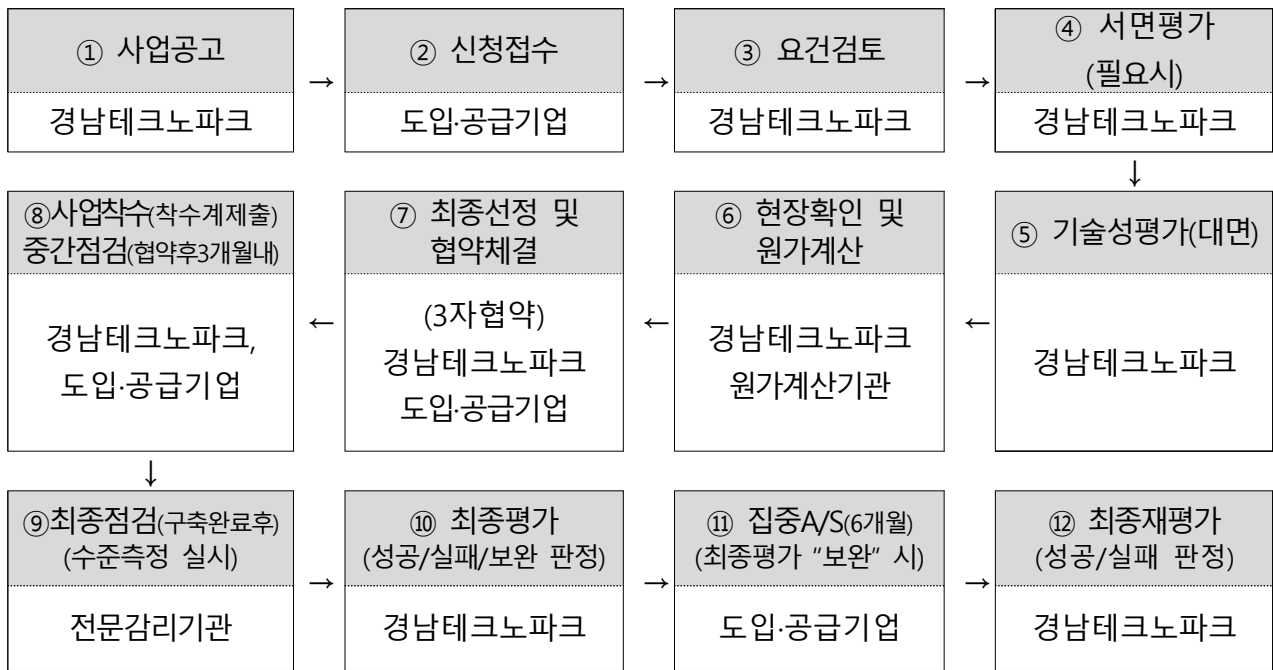
3 평가 및 추진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절차 (붙임3 참고)

- (서면 평가)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, 지원 적정성 및 도입·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
 - *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,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
 - * 필요시 생략될 수 있음
- (기술성 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
- (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
 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* 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
 - 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- (최종 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

□ 추진 절차



* ⑩ 최종평가결과 "보완"인 경우 '⑪ 집중A/S' 및 '⑫재평가' 진행

4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
□ 신청·접수 관련

○ (컨소시엄 구성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

- 다만,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*도 가능(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)

*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

□ 지원금 지급시기

○ (지급시기) 착수계 제출 후 총사업비의 60% 지원금 일괄 지급예정

☞ 지원금(60%)은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

☞ 기업부담금(40%)의 선입금(사업계좌 입금) 조건이며,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필수

□ 사업비 편성 관련

- (필수 비용) ① 회계 정산 수수료, ② 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

① 회계 정산 수수료: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

<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>

총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(공급가액 기준, 천원)	비고
50백만원 이하	455	부가세 제외
200백만원 이하	637	
400백만원 이하	910	
400백만원 초과	1,182	

* 정산대상 사업비(총사업비): 지원금(60%) + 민간부담금(40%)

* 본 사업은 RCMS 시스템 미적용

② 기술임치비: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(45만원) 필수 편성

< 기술임치제도 >

- (임치제도)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,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
- (임치효과)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,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
- (의무사항)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,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,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

※ (임치기관)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, escrow@win-win.or.kr)

- (현물편성)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(현금·현물 모두가능)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%*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

* 최대 960만원 이내에서 편성

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*을 편성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

*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, 소기업 규모 기준은 [참고3] 확인
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

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

□ 교육 이수

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“스마트공장 교육”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

- (교육기관)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② 경남테크노파크

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(<https://ssup.kosmes.or.kr>),

<스마트공장 교육 현황>

구분	세부 내용
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: 도입·공급기업(①대표자 및 임원, ②실무자)[각 대상기업별 1명, 총 2명] - 내용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방지교육, 우수사례, 사업비 사용법 등 *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,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- 비용: 온라인교육 무료수강

② 경남테크노파크 공동훈련센터(<https://hrd.gntp.or.kr>)

구분	세부 내용
집체교육 (오프라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: 도입·공급기업(①대표자 및 임원, ②실무자)[각 대상기업별 1명, 총 2명] - 내용: 공정관리 표준화 실무 스마트공장 적용 전략, 스마트공장 데이터 활용 SPC 및 품질개선 실무 등 * 협약 후 완료보고서 제출 전까지 수료 후 수료증 첨부 - 비용: 무료수강 (단, 대규모 기업(500인 이상)은 기업부담금 20% 발생)

□ 기타 사항

-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’을 따름

- 단, 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(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, **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**하여 설정
-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(선급금)보증보험증권(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, **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**하여 설정

- 산출물 작성 시 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’ 메뉴얼 참조

-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
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
- 자격·유형·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, 오기재·누락·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
- 온라인 신청·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
-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

붙임 1**시·군별 사업량 기초 배정현황 및 연락처****□ 시·군별 사업량 기초 배정현황**

시·군	목표 사업량(개사)
	기초
창원시	20
진주시	5
통영시	1
사천시	3
김해시	15
밀양시	2
거제시	1
양산시	5
의령군	1
함안군	5
창녕군	2
고성군	1
남해군	1
하동군	1
산청군	1
함양군	1
거창군	2
합천군	-
계	67

* 경남도 및 기초 시·군 예산 편성현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

** 해당 기초 시·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협약 중 타 시·군으로 이전할 경우 시·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*** 배정 시·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□ [재]경남테크노파크 및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

소 속	부 서	연락처
경남테크노파크	스마트제조혁신센터	1811-8297
경상남도	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	055-211-3974
창원시	미래전략과	055-225-2353
진주시	기업통상과	055-749-8132
통영시	일자리경제과	055-650-5232
사천시	투자유치산단과	055-831-3476
김해시	전략산업과	055-330-2405
밀양시	투자유치과	055-359-5838
거제시	조선지원과	055-639-4156
양산시	산업혁신과	055-392-3453
의령군	경제기업과	055-570-3112
함안군	경제기업과	055-580-2653
창녕군	일자리경제과	055-530-1693
고성군	경제기업과	055-670-2314
남해군	경제과	055-860-3229
하동군	투자유치과	055-880-2204
산청군	경제기업과	055-970-6843
함양군	일자리경제과	055-960-4744
거창군	경제기업과	055-940-3364
합천군	일자리경제과	055-930-3383

붙임 2

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

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(기존사업 수행 중인 경우)

사업명(지원유형)	2022	2023	2024	2025
- 경남형 기초구축 스마트공장				
-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				
-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(AI트랙 제외)				
- 디지털협업공장				
-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			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				
- 자율형공장				
- 제조혁신 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				

※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, 26년 경남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
 ※ 단, 집중A/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(성공 판정)된 경우 신청 가능

동시 지원·선정 제한사업 목록('26년 신규 신청인 경우)

26년 사업명	내용
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(점프업 및 레전드50+, 지역특화형 포함)	①~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
② 자율형공장	
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(AI트랙 제외)	
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
⑤ 디지털 협업공장	
⑥ R&D성과확산 스마트공장	
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	
⑧ 제조AI특화(자율형공장 AI트랙)	①~⑥ 사업 중 하나와 ⑧, ⑨ 사업 동시수행가능
⑨ 제조혁신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	
⑩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	①~⑨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(단,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)

□ '참여제한'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

사업명	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
①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'제재현황목록' *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- 사업관리 - 종료과제 관리 - 제재현황목록
제조로봇도입	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-210-9532~9
자동화공정구축	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-2183-1623~5
② 데이터 인프라구축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'제재현황목록'
③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'제재현황목록'

※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,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·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**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**

붙임 3

평가지표

□ 요건검토

검 토 항 목	
사업자등록증명원	◦ 사업자의 상태(계속/휴업/폐업),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일치 여부, 업종 및 업태 확인
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◦ 기업규모 및 유효기간 검토
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◦ 세금 체납·유예 여부 확인
재무제표	◦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 경제지표 확인
가점	◦ 최초구축, 공급기업 본점 소재지, 인증기업(QC) 여부 확인

□ 기술성 평가지표

평가 항목		배점
도입·공급 기업 역량 (35점)	◦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(20점)	◦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◦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(20점)	◦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(25점)	◦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	◦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	◦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가점(5점)	-	(5)
합 계		100

- ※ 동점 과제는 '①가점 제외한 총점, ②구축내용 적절성,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,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, ⑤기업역량'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
 ※ 동점자 처리기준 :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
※ (참고) 가점 항목(3개)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제출 서류
1	최초구축 (5점)	◦ 2018년 8월 이후 정부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 도입기업	사업관리시스템 이력확인
2	공급기업 소재지 (본사 기준) (3점)	◦ 공급기업(본사 기준) 소재지가 경남 여부	법인등기부 등본
3	추천상품(QC) 지정 (3점)	◦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(QC) 지정 제조기업 여부 (2026년 상반기 기준) ◦ 유효기간 확인	경상남도 추천상품(QC) 지정서

- ※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 가점 부여(최대 2개까지 인정)하며,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

□ 현장 확인 항목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◦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	◦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◦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	◦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	-